

1997 年渡

[10]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行政事務監查特別委員會)

楊 州 郡 議 會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1997년 12월 24일 제62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것임.

목 차

1. 감사의 목적	255
2. 감사기간	255
3. 감사대상기관	255
4. 감사실시 경과	256
5. 주요감사 실시내용	257
6.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64
【 공통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	264
【 본 청 】	264
□ 기획감사실	264
□ 문화공보실	266
□ 내무과	266
□ 사회진흥과	267
□ 재무과	268
□ 지적과	270
□ 사회과	271
□ 환경보호과	272
□ 가정복지과	274
□ 산업과	275
□ 축산과	277
□ 지역경제과	277
□ 산림과	279
□ 건설과	279
□ 도시과	281
□ 주택과	283
□ 민방위재난관리과	283
□ 보건소	283
□ 농촌지도소	284
□ 문화관광사업소	284
□ 상수도사업소	284
□ 위생환경사업소	285
【 읍·면 공통 지적사항 】	285
7. 종인출석 현황	288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음

2. 감사 기간 : 1997. 12. 1. ~ 12. 5. (5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본청◦ 보건소◦ 농촌지도소◦ 문화관광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군립도서관◦ 위생환경사업소◦ 읍·면	“ 없 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日 時	監 査 對 象 部 署	監 査 場 所
12. 1(월) 10 : 00	기획감사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군립도서관, 읍·면	
12. 2(화) 10 : 00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민방위재난관리과	
12. 3(수) 10 : 00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재무과, 지적과	의회 본회의장
12. 4(목) 10 : 00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주택과, 보건소	
12. 5(금) 10 : 00	지역경제과, 산업과, 산림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5. 주요감사 실시내용

對象部署	監查方法	主要監查事項	備考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 답변청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시책 심사평가 사항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3. 예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치경영, 감사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 홍보시책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내용 ◦ 홍보 실적 2. 향교,사찰의 재산관리 실태 3. 지방문화 예술지도 및 육성실태 4. 문화재 보수 및 문화재 관리실태 	
내무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 및 인사관리 사항 2. 읍·면(민원)행정·지도 감독사항 3. 공무원 사기양양 대책 4. 민원 행정 5. 법제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6. 행정전산화사업 실적 7. 기타 필요한 사항 	

對象部署	監查方法	主要監查事項	備考
사회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청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공사 2. 새마을단체의 지도육성 관리사항 3. 광고물정비 지도, 단속 4. 군민 체육진흥 및 청소년 대책 5. 체육시설물 관리실태 6.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 사항 	
재무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수 증대사항 2.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3. 세외수입원 빌굴 및 징수사항 4. 지방세 감면, 면제, 결손,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사항 	
지적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거래 허가 및 토지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지적 및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생활 보호대상자의 관리와 특수 영세민 관리 3. 식품,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허가 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 4. 의료보호기금 관리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對象部署	監查方法	主要監查事項	備考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청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보전업무 추진사항 2.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사항 3. 공해업소 지도단속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가정복지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 복지업무 추진사항 2. 아동 복지업무 추진사항 3.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사항 4. 보육시설 관리실태(지도,감독) 5.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증대 사업 추진사항 2. 농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사항 3. 농지 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사항 4. 농수산물 유통지원 및 추진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축산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 진흥시책 추진 사항 2.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관리 지도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對象部署	監查方法	主要監查事項	備考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청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등록 및 무허가 공장에 대한 관리 실태 2. 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사항 3. 중소기업 육성관리 실태 4. 자동차 등록현황 및 무허가 정비 업소 단속사항 5. 에너지(가스)안전 관리 실태 6. 기타 필요한 사항 	
산림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 훼손허가 및 사후관리 사항 (토석 채취 포함) 2.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태 3. 가로수 보식 및 식재관리 사항 4. 국·공유 임야관리 실태 5. 기타 필요한 사항 	
건설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 추진사항 2. 군도 개설 및 포장 추진사항 3. 각종공사관련 용지 미보상 내역 및 추진사항 4. 농어촌 정주권 사업 추진사항 5. 하천관리 실태 및 불법사항 지도감시 사항 6.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실태 7.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타 운영실태 6. 기타 필요한 사항 	

對象部署	監查方法	主要監查事項	備考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청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도 감독사항 3.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사항 4. 도시계획 입안 추진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주택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허가 및 준공 현황 (근린생활시설) 2. 불법 건축물 및 용도변경 사항 3. 국민주택, 아파트 관리사항 및 주택융자금 회수 사항 4. 농촌 주택 및 변소개량 사업 (패키지프로젝트 사업) 5. 기타 필요한 사항 	
민방위 재난관리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과 지도감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항 ◦ 교육 불참자에 대한 원인분석 사항 2. 재난방지 종합대책 	

對象部署	監查方法	主要監查事項	備考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청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 복무지도 감독사항 2. 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정수 3. 방문보건 사업 및 노인건강관리 4. 진료소 보건사업 업무 5. 의,역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농촌지도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농민 기술지도 실적 및 향후 지도방향 2. 농민 후계자 육성 및 농과계 학교 졸업생 영농정착 지도사항 등 인력육성 사항 3.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사항 4. 농수산물 유통개선 사업 5.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영농 기계화 지도, 훈련사항 6. 경제작물 시범사업 7. 축산사업 8. 지역특화 작목 기술개발 사업 9.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관광 사업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관광사업소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對象部署	監查方法	主要監查事項	備考
상수도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 답변청취 	<p>1. 상수도사업소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p>	
군립도서관	"	1. 도서관 업무전반에 관한사항	
위생환경 사업소	"	1.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읍·면	"	<p>1. 민원처리 사항(사안별) 2. 각종 지방세 징수현황 3.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 4. 불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5. 현안 민원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p>	

6.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 공통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 보고서 작성 및 보고방법 개선

○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 보고내용이 투자사업실적 위주로 작성되거나 보고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실제 추진하지 않는 시책을 포함한 예가 있었고
- 정책분야별로 취지, 추진방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나열하므로서 종합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 년초에 계획된 사무 중 실적보고서에는 누락된 예가 있었고
- 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협조를 구하거나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지적함.

○ 향후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심을 가져주시므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람.

【 본 청 】

□ 기획감사실

(1) 종합관찰제 운영 방법 개선

- 종합관찰제 운영취지는 바람직하나 일부 공무원만의 참여, 예산수반 사항의 통보 기피, 관찰사항의 지연처리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기관·단체·주민이 총참여하고 관찰내용 처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기

동처리반 운영등 종합관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 추진하기 바람.

(2) 경영수익사업 추진 재검토

-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재원중 일반회계 이자수입 상응액의 전출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같은 조치가 불가하다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통상 년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의 전출시기도 특별회계의 자금운영이 용이하도록 년초에 이행하는등 시정이 요구되며
-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한 체육공원 조성계획은 매립이 완료됨과 동시에 부조지성 및 활용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시설계획중 가족놀이 퍼팅장이 현재의 주민정서에 맞는지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3) 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 서울 시내버스의 관내 연장 운행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의정부시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서울시측의 행정사항 결정 등향 파악 및 도심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한 시외버스 정류장의 시외곽 이전조치에 대한 대책, 시내버스 운행시 막차시간 조정 등 군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을 사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관련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기 바람.

□ 문화공보실

(1) 국민관광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의 차질없는 추진

- 감악산과 기산리가 국민관광지 개발대상지로 확정되어 있으나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시 기산리가 누락된 바 예산부족이 이유라면 '98 예산안 수정안을 통해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2) 문화재 사업 추진시 고증 및 자재관리 철저

- 동헌 복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석재와 목재의 질이 불량하고 진입로, 장판, 도배등 자재와 형식등이 전문가의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 추진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재검수와 복원 문화재의 고증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내 무 과

(1) “군민의 소리 듣기” 전화 운영 내실화

- “군민의 소리 듣기” 전화 설치 운영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하니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전 가정에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기 바람.

(2) 국가사무 추진 예산 전액 국비지원 건의

- 광공업통계와 같은 국가사무중 인건비등 일부예산만이 지원되는 사무를 전수조사하여 관련예산이 전액 지원되도록 건의하기 바람.

(3) 전산직 적정배치 및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강화

- 전산직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전산과 관련이 없는 사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들을 관련부서 또는 관련업무에 종사케 하므로서 이

- 들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하고
- 전산디스켓 관리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완해 주기 바라며
 - 간부공무원의 전산지식 부족은 행정의 전산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있으므로 새로운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확대 실시해 주기 바람.

(4)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대책 강구

- 읍·면의 농업직공무원들은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기존의 법령에 구속되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농업직의 전직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도에 건의하여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5) 의회 추천 군정유공자 표창 확행

-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공자로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시행하되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지방세 징수율, 징수금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표창의 효용성을 제고해 주기 바람.

□ 사회진흥과

(1) 명예감독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예감독관 지정 및 활용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2) 새마을 행사시 찬조금 모금 금지

- 경노잔치, 불우이웃돕기 행사등 새마을 행사시 찬조금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어 참석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이와같은 행사는 주관부서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주기 바람.

(3)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 과거 새마을 사업 추진관계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이들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목변경, 등기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 바람.

(4) 새마을지도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점차 지도자에서 봉사자로 변질되어 가고 지도자로서의 적절한 기능과 동기부여도 미흡한 실정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상응한 교육과 동기부여로 새마을사업이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자 관리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재무과

(1) 부서운영비 집행지침 준수

- 부서운영비가 본래의 집행지침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직원사기양양과 부서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용도로 집행되도록 지침 준수를 강조해 주기 바람.

(2) 금고계약 방법 개선

- 금고계약이 '99년 말로 만료되는 바 금융개방에 대비하고 금고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98년 중 관련조례의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3) 세입예산 판단 관행 개선

-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전망을 하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이자수입이나 취득세, 등록세, 담배 판매세등 지방세는 당해연도의 행정여건이나 증감 요인을 감안하고 지역의 개발수요와 전년도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기 바람.

(4) 의회 추천 군정유공자 표창 확행

-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공자로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되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지방세 징수율, 징수금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표창의 효용성을 제고해 주기 바람.

(5)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시 영치사실 통보서상의 행정처분 법적근거 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체납자의 번호판 분실 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6) 지방세 부과·징수 관행 개선

-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보면 목표액은 과소책정하고 부과 및 징수는 사실대로 하므로서 부과·징수 실적이 목표를 초과달성을 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 있어 상당액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지방세 목표액 산정을 사실대로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도록 시정 바람.

(7) 수로원 수송방법 개선

- 수로원의 현장투입 및 철수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덤프트럭이 이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공직자들이 절약에 솔선할 수 있도록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시기 바람.

□ 지적과

(1) 신속한 FAX 민원 처리대책 강구

- 민원인들로부터 FAX 민원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이 크다는 여론이 있는 바 민원사무량, 처리과정, 민원장비 및 인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바람.

(2) 개별공시지가 운영제도 개선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는 지적과의 업무인데 과다한 업무량을

읍·면에 부과하여 관련업무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자조사 보조요원 추가확보와 충분한 교육을 통해 본업무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 표준지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인근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표준지가 산정 및 개별 지가 검증에 참여하는 건교부 지정 감정사에 대한 이해·설득과 함께 지가 산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법령·제도는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건교부에 건의해 주기 바람.

(3) 지적 불부합 토지 처리대책

- 지적 불부합 토지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토지의 측량과 검사업무를 수행한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사회과

(1)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발방법 개선

-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발시 저소득층이 아닌 농업경영인 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선발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람.

(2) 장애인 권리 대책

-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은 기업체등이 일정비율로 장애인의 의무적 고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이 솔선수범하여 이들의 근무가 가능한 부서 및 직종을 선별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 최근 준공된 장애인 복지회관의 공사현장을 확인한 바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감리자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출입구, 용변기등 장애인의 활용에 부적합한 구조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부적시설이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 막대한 재원을 투자된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소수인원이고 수입 또한 소액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업인원 및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묘지관리 제도 개선 건의

- 자기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전 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사실임을 감안 인우보증등에 의한 사실확인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 매장등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 환경보호과

(1) 128 신고전화 설치상황 홍보 및 운영 내실화

- 128 환경오염 신고전화 설치에 따른 홍보가 미흡해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신고한 때에도 관계공무원의 비상출동 태세가 되어있지 않아 오염원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2) 정화조 실명제 확대 실시 및 전산화

- 정화조 실명제는 최근의 허가건물등을 시행대상으로 하고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대한 관리도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등 정화조 관리업무를 개선해 추진하기 바람.

(3)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실패후 사후관리대책 강구

- 한삶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음에도 불법시설이 잔존하고 쓰레기가 반입되어 처리되는 등 부실운영되고 있으니 현장확인하여 사후관리에 엄정을 기하기 바람.

(4) RDF 처리방식의 검증을 통한 쓰레기 처리

- 회천읍에 설치한 RDF 쓰레기처리 공법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공식적인 검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다양한 분석과 검증을 실시해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5)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의 환경오염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강구

- 건축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대량의 분쇄물을 노지에 야적하므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야적 및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사하여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 처리업소의 세륜장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오염원이 다량 배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 및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람.

(6) 백석 쓰레기 매립장 정화시설 정비

-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차집관로 시설도 장기간 후에나 완비될 전망이므로 우선 매립장의 정화시설을 정비하여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7) 실천가능한 환경보전 계획 수립·추진

- 연초 업무계획 및 년말 업무실적을 비교해 보면 음식적 유형별 급식방법 모형 개발·보급,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계획 및 사업장 점검등 실제 추진하지 않는 시책을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실제 추진가능한 시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시기 바람.

□ 가정복지과

(1) 어린이공원 개발계획 수립 추진

- 도시계획 용도지구중 어린이공원 시설지구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어린이 놀이터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2) 노인의 날 행사 추진내용 재검토

- '97년 새로 지정된 노인의 날 행사는 제정취지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진정으로 노인분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의 행사가 되도록 연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영유아 보육시책 추진 개선

- 어린이의 집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립보육 시

설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면民間이 동 시설을 운영코자 할 경우 관련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이 임의로 시설·자격등을 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 지방보육위원회 구성도 공립보육시설 관련자외에 사립시설 대표자도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 공립과 사립시설이 영유아 보육시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여성단체 활동방향 개선

- 현행 여성단체 운영은 각 단체의 대표자급 소수인원만이 참여하여 실적 위주의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단체별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소속 회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사업내용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산업과

(1) 농촌구조개선사업 사후 관리 개선

- 주내 농산물집하장 관리실태를 확인한 바 영농조합법인 구성 이전부터 외지인 참여자수가 늘고 있고 집하장 시설과 2대의 수송차량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과 인접한 우리지역에 집하시설이 필요한지와 영농현장에서 직접 포장·출하되는 현지 사정을 감안할 때 집하시설 존치의 필요성과 지원금 회수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개선하기 바라며
- 농기계 보관창고도 일부지역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 또는 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바 이용실태를 전

반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시정대책을 강구하시고 동시책의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람.

- 아울러 개량물과 지원사업도 경지정리 지구를 제외한 여타지역은 실효성이 적어 예산낭비의 요인이라는 여론이 있는 바 지원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단 또는 축소를 건의하는 등 농촌현실에 맞게 농촌 시책을 추진하기 바람.

(2) 농지원부 일제정리

-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 관리실태를 보면 부재자, 사망자등은 등재된 체 방치되고 실제농민이 누락되는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실정임. 일정기간을 정하여 농지원부상의 현실 불부합 사항을 일제정리 하므로서 엄정한 농정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3) 한삶회 사후관리대책 강구

- 단기간동안 한 영농조합법인에 거액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부실로 부도가 났음에도 보조금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조합의 대표는 물론 책임있는 조합원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 일내에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농업보조시 사전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농지전용허가 민원 반려시 자의적 판단 금지

-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반려사유를 보면 집단농지 피해우려, 인근농지 잠식우려,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 있음, 전용목적의 실현성 없음 등과

같이 전체농지나 민원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표현 하므로서 민원인들로부터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합리적인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부득이 반려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민원인의 불필요 한 오해가 없도록 시정·보완해 주기 바람.

□ 축 산 과

(1) 소 이표장착 및 전산화 추진 방법 개선

- 동 시책의 추진 취지는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이표장착 후 매매, 폐사, 도살등으로 인한 중감동향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생산되는 소를 대상으로 이표를 장착하고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하는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소값동향도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농가에 통보하여 농가가 사육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시행하기 바람.

(2)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완대책 강구

- 최근 권장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정부로부터 인가된 업체가 시공하고 환경보호과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시설의 배출수가 사후 환경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기존시설의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지역경제과

(1)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 관련 조치

- 우리 군이 서울시내버스의 관내 연장운행 성사를 희망하는 반면에 서울 시는 영종, 명진, 대성동 시외버스 정류장을 도심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수유리등 시외곽으로 이전조치 한 바 이와 관련해 서울시측 과의 행정협의회시 지방운송업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외버스가 종로5 가를 경유하는 방안과 서울시내버스의 막차 운행시간이 전철등 지역 교통수단과 연계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기 바람.

(2) 마을버스 운행제도 개선

- 관내 적자노선에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손실보상금을 예산에 확보해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 마을버스 운행 노선 조정시 기존버스 운행구간과 일부만 중복되어도 이들이 반대하여 그 불편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바, 향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마을버스를 통합하고 한시허가를 정식 운수회사로 허가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3) 시내버스 편법 요금인상 시정

- 시내버스가 좌석버스로의 전환은 편법 요금인상으로 분석되는 바 이와 같은 실태와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하여 시정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물가안정을 위한 업소단속 관행 시정

- 물가안정에 비협조적인 업소 관리를 위해 단속부서를 동원한 물리적 통제와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의 횡포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업소에

대한 이해·설득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제를 통한 자율 인하를 유도해 나가야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업소제재가 필요하다면 관련법에 단속근거를 규정하도록 건의하기 바람.

□ 산림과

(1) 산불예방 관리체계 보완

-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산불감시원 순시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산자에 대한 통제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군수 홍보 서한문은 대상을 일반주민으로 확대하여 배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검토해 주기바라며; 진화장비중 무전 기를 사용치 않는 하절기에는 이를 수방단의 재난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가로수 관리 강화

- 최근 신설되는 도로는 가로수 식재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기개설구간에 대한 신식계획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기존로선의 사고목에 대한 보식도 함께 추진해 주기 바람.

□ 건설과

(1)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법 개선

-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97년부터 관리부서를 일원화 했으나 허술한 관리체계와 예산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인 바 향후 가로등 위치도 작성 및 등별 고유번호 부여, 고장신고 접수·처리부

비치, 야간 가로등 관리실태 현장확인, 신속한 수리체계 립을 위한 보수업자 선정, 신설 및 고장수리시 A/S 체계, 소요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가로등과 관련된 주민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소형관정 폐공방법 개선

- 소형관정의 폐공방법이 허술하여 지표수 오염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대형관정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게 폐공처리하여 이로 인한 문제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수로원 수송방법 개선

- 수로원의 현장투입 및 철수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덤프트럭이 이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공직자들이 절약에 솔선할 수 있도록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시기 바람.

(4) 공공사업 협의 불응자등에 대한 조치

- 각종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 불응자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사업지연 및 중단등의 원인이 되고 또한 협의가 지연되면 될 수록 당사자는 이익을 본다는 불건전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불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5) 정주권사업 도로포장폭 확보

- 정주권사업등으로 시행되는 도로확포장공사의 도로폭은 최소한 4m, 가능

다면 5m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도로확포장의 실효성을 볼 수 있게 추진하기 바람.

(6) 오산-연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 착수방안 강구

- 오산-연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착수에 관해 수년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되어 왔으나 지연되고 있으므로 '98년 예산에 보상비로 계상된 3억8천만원을 수정안을 통해 시설비로 전환하고 추가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 조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 하기 바람.

(7) 건설기계 면허정지 및 취소 사전 안내

-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와 같이 적성검사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주므로서 적성검사 해태에 따른 불이익이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8)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에 수리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한 업자와의 고장수리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시간의 과다소요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신고 접수·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 도 시 과

(1) 신천개수구간내 차집관로 시설 방법 전환

- 최근 사업이 마무리 된 신천개수 구간내에 뒤이어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 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두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2) 도시계획도로등 체불용지 보상대책 강구 - 공통

-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중 미보상 토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군이 공공 사업을 추진하고도 보상이 않은 체불용지가 상당수 있어 민원이 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현황을 전수 파악해 보고 적절한 보상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3) 군사시설보호법등 지역개발 제한법규 완화 적극적 추진

-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도시계획법등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법령의 완화를 위해 상급기관등에 수차례에 걸쳐 서면 건의등을 해 왔으나 그 방법이 소극적이어서 특별한 조치실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해당 부처나 군부대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조치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 G·B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주민의 피해의식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고발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원상복구등 조치를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조치하기 바람

□ 주 택 과

(1)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제도 재검토

- 군이 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지원을 위한 “선융자 후담보”계획은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이로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농협측과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기 바람.

□ 민방위재난관리과

(1) 민방위 재난관리태세 재정비

- ‘97년말 기준 민방위대원이 16,883명인데 개인화생방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집단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유사시 대처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개인장비의 추가 확보와 보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 통신망 두절시 청내 아마츄어 햄 회원들을 활용한 재난통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등 민방위재난 관리태세를 재정비하기 바람.

□ 보 건 소

(1) 보건의료사업 추진 개선

- 전염병 관리에 있어 유행성출혈열, 독감등 예방접종은 목표설정 및 실적 관리가 무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 노인건강 생활운동의 혈압 및 당뇨검사는 측정만 하고 이상자에 대한 처방이 없어 실효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기 바람.

□ 농촌지도소

(1) 배추 연작피해 예방사업 투자효과 분석

- 배추 연작피해 예방 사업사업 투자비가 0.6㏊에 11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작황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큰 무·배추등 농작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방사업을 자비로 추진할 경우 과연 투자효과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권장하기 바람.

(2) 지역농업센타 운영 방법 개선

- 지역농업센타가 농민들의 현장 실험 실습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과정 별로 과종에서 수확까지 이들을 직접 참여시켜 기술을 습득케 하고 실습장 운영 인력 및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 문화관광사업소

(1) 문예회관 시설 보완

- 문예회관이 완공된 후 이용자의 여론에 의하면 야외공연장의 바닥은 잔디가 합당하다는 등 시설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시설전반을 재검토하여 부적합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해 나가기 바람.

□ 상수도사업소

(1) 광역상수도 5단계 급수계획 재검토

- 양민협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지하수를 공급하도록 계획된 바 사후 지하

수 고갈에 따른 물량부족시의 대책과 수원지 주변 주민의 피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양민협 추진하고 있는 수원개발을 농진공등에 의뢰하고 배수지를 따로 설치하거나, 단계 물량을 관내 전 지역으로의 온라인화 하는 사업을 착수하는등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급수계획을 검토해 주기 바람.

(2) 상수도 급수제한 공고 해제

-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시 까지 상수도 급수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두천시 공급물량의 확대와 기배정 물량증 여유분이 늘어남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이 해소되고 있으니 제한사항을 즉시 해제하여 주기 바람.

□ 위생환경사업소

(1) 완벽한 탈취시설 보완

- 혐오시설 주변 주민들은 시설이 소재한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으로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 때에는 냄새가 심해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는 바 저기압 상태에서도 완벽한 탈취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하여 도비등 지원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람.

【 읍 · 면 공통 지적사항 】

(1) 의회 추천 군정유공자 표창 확행

-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공자로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

시하되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지방세 징수율, 징수금액, 징수를 위한 노력등을 종합평가하여 표창의 효용성을 제고해 주기바람.

(2) 지하수 폐공 복구 철저

- 농업용수, 기타용도로 개발 사용중이던 관정이 폐공되면 즉시 군에 보고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복구하므로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람.

(3)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출석여부 엄정관리

- '98년부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출석관리는 실제 응소자만을 출석처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사태사습능력을 제고하기 바람

(4)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 가로등 관리에 있어 군에 수리예산을 일괄 확보하고 체결한 한 업자와의 고장수리체계는 가로등이 예고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예산의 부족과 수리시간의 과다소요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장신고 접수·수리책임을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5)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개선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시 영치사실 통보서상의 행정처분 법적근거 조항 표시가 오기이고, 앞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들은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봉인된 뒷편 번호판을 근거로 재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음. 체납자의 번호판 분실 신고시 관허사업 제한의 방법에

따라 체납세 납부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6) 묘지관리 제도 개선 건의

- 자기토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관습임. 사후에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 또는 합장코자 하는 경우 과거 매장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야, 전등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과거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관습에 의했던 사실임을 감안 인우보증 등에 의한 사실확인등 필요한 방법을 고안해 이장, 매장 등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건의하기 바람.

(7) 지방세 부과·징수 관행 개선

-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보면 목표액은 과소책정하고 부과 및 징수는 사실대로 하므로서 부과·징수 실적이 목표를 초과달성을 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 있어 상당액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지방세 목표액 산정을 사실대로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토록 시정 바람.

(8)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주내면, 장흥면)

- G·B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주민의 피해의식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고발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원상복구등 조치를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근거

하여 조치하기 바람

7. 증인출석 현황

出席對象	日 時	場 所	內 容	備 考
기획감사실장	'97. 12. 1(월) 10:00	의회 본회의장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및 관련계장 배석
내무과장	"	"	내무과 소관업무	"
사회진흥과장	"	"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
군립도서관장	"	"	군립도서관 소관업무	관련공무원 배석
읍·면장	"	"	읍·면 소관업무	관련공무원 및 관련 계장배석
환경보호과장	'97. 12. 2(화) 10:00	의회 본회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및 관련계장 배석
위생환경 사업소장	"	"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배석
도시과장	"	"	도시과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및 관련계장 배석
상수도 사업소장	"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	"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

出席對象	日 時	場 所	內 容	備 考
문화공보실장	'97. 12. 3(수) 10:00	의회 본회의장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및 관련계장 배석
문화관광 사업소장	"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업무	"
재무과장	"	"	재무과 소관업무	"
지적과장	"	"	지적과 소관업무	"
사회과장	'97. 12. 4(목) 10:00	의회 본회의장	사회과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및 관련계장 배석
가정복지과장	"	"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
건설과장	"	"	건설과 소관업무	"
주택과장	"	"	주택과 소관업무	"
보건소장	"	"	보건소 소관업무	"
지역경제과장	'97. 12. 5(금) 10:00	"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
산업과장	"	"	산업과 소관업무	"
산림과장	"	"	산림과 소관업무	"
축산과장	"	"	축산과 소관업무	"
농촌지도소장	"	"	농촌지도소 소관업무	"